

2026년 과학기술 창업경진대회 공고

「올해의 K-스타트업 2026 연구자리그 연계」

2026년 과학기술 창업경진대회(올해의 K-스타트업 2026 연구자리그 연계)의 참가자(팀) 모집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예비)창업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4월 15일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 경 훈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장 김 병 국

1 대회 개요

□ 목적

- 우수 공공연구성과 기반 (예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공공연구개발 분야에 특화된 “과학기술 창업경진대회” 개최를 통해 연구현장의 창업 생태계 확산
- 창업경진대회로 발굴된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 (예비)창업자 지원 및 투자유치 연계 등 공공연구성과 활용 제고

□ 대회 운영주체

- (주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 지원대상

- 대학·과기특성화대, 출연(연) 등 보유한 공공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한 초기 실험실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팀

※ 창업트랙과 예비창업트랙을 구분하여 모집 및 선발

□ 참가자격 및 선발규모

- (창업트랙) 대학·과기특성화대, 출연(연) 등 보유한 공공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한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초기 실험실 창업기업
 - (선발규모) 서류심사 및 발표심사를 통해 15팀 선발
 - (최종선발) 사업화 역량 컨설팅 이후 결선심사를 통해 최종 우수 7팀 선발
 - ※ 창업트랙 최종 선발 7팀 에게는 후속 컨설팅 및 연계 대회 출전 지원
- (예비창업트랙) 대학·과기특성화대, 출연(연) 등 보유한 공공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한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팀
 - (선발규모) 서류심사 및 발표심사를 통해 15팀 선발
 - (최종선발) 실역량강화 멘토링 이후 결선심사를 통해 최종 우수 7팀 선발
 - ※ 예비창업트랙 최종 선발 7팀에게는 집중 멘토링 및 시드투자 유치 프로그램 지원

□ 참가 제외 대상

- 참가 제외 요건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될 경우 참가할 수 없음

< 참가 제외 요건 >

- ① 타인의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사실이 있거나 침해 관련 소송 등의 재판 진행중인 자(기업) 또는 아이템
-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과 사행성 및 환경오염 유발 등 반사회적 성격의 창업 아이템
- ③ 부처통합 창업경진대회 “도전! K-스타트업 왕중왕전 2016 ~ 2025” 기 수상자(팀원 포함) 또는 수상 아이템(특별상 수상자 제외)
- ④ 통합공고일 기준 동일 또는 유사한 아이টে으로 최근 3년간(2023~2025) 他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누적 상금 3천만원 이상 받은 자(팀)
 - 他 창업경진대회는 민간·공공·대학에서 주최한 모든 ‘창업경진대회’와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포함
 -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한정하며, 기술개발, 실증 등 사업화 목적의 지원금과는 별개
 - 예비창업팀의 경우 ‘팀장’(팀원제외), 창업팀의 경우 ‘대표자’와 ‘창업기업’ 수상 내역 확인
- ⑤ 공고일 기준 누적 투자유치 금액 30억 원을 초과한 팀(기업)
- ⑥ 창업트랙의 경우 아래 프로그램에 동일·유사한 아이টে으로 진출한 자(팀)은 중복 참여 불가
 - 『올해의 K-스타트업 2026』 타부처(중기부, 교육부, 문체부 등) 리그
 - 2026년 행정안전부 주최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통합본선

※ 향후 참가자격 관련 제외 기준이 확인될 경우 자격박탈 및 상금환수 등 조치 예정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신청기간) 공고일 ~ 5. 13.(수) 18:00까지
- (신청방법)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창업탐색선도센터 이메일 접수
 - (접수 이메일) lab@compa.re.kr
 - (접수 문의처) 02-6347-5547
 - 신청 시 창업트랙*과 예비창업트랙을 구분하여 신청
 - * 업력 3년 이내('23.3.27. 이후 창업)

□ 제출서류

- ① (트랙공통) 과학기술 창업경진대회 참가신청서 1부. (별첨. 서식1)
- ② (창업트랙) 사업자등록증 1부. (별첨. 서식 2)
 - ※ 창업트랙 신청자(기업)로, 통합본선 공고일('26.3.27.) 이전 창업자에 한하여 제출
- ③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1부. (별첨. 서식 3)
- ④ 과학기술 창업경진대회 참가 서약서 1부. (별첨. 서식 4)
- ⑤ 2026년도 『과학기술 창업경진대회』 사업계획서 1부. (별첨. 서식 5)

4

경진대회 추진절차 및 일정

□ 추진절차 및 주요 일정

< 과학기술 창업경진대회 추진절차 및 일정(안) >

참가신청	서류심사	요건검토	발표심사	사업화 역량 컨설팅	결선심사 (데모데이)	후속 지원
창업트랙 예비창업트랙	트랙별 30팀 선발	서류심사 합격팀	트랙별 15팀 선발	사업계획 고도화 컨설팅 BM 고도화 및 집중 멘토링	트랙별 우수 7팀 선발 및 시상	역량강화 컨설팅/ 투자 유치 지원 프로그램
~5.13	5.27~6.1	6.1~5	6.10	6월~8월	8.11~13 中 1일	9월~12월

※ 일정 및 평가방식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심사절차

○ (심사절차)

- (트랙공통) 서류심사(30팀) → 요건검토(30팀) → 발표평가(15팀) → 결선심사(데모데이) → 트랙별 우수팀(7팀) 선발

※ 중도포기자, 요건검토에 따른 참가 부적격자 발생 시 차순위자로 선정

○ (심사방법)

- (트랙공통) 기술성·사업성을 바탕으로 문제인식, 해결방안, 성장전략, 대표자 및 팀원의 보유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PSST 방식*)

* PSST : P(Problem, 문제인식), S(Solution, 실현가능성), S(Scale up, 성장전략), T(Team, 팀 경쟁력)

< 심사지표(안) >

평가항목	세부내용	배점	
		창업트랙	예비트랙
문제인식	창업아이템 개발동기, 목적 및 필요성	20	30
실현가능성	사업전략, 목표 계획의 구체성, 시장조사(경쟁우위), 수익 창출 가능성, 창업아이템의 사업화 전략, 시장분석 및 경쟁력 확보방안	30	40
성장전략	자금소요 및 조달계획, 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출구(EXIT) 목표 및 전략	40	20
팀 경쟁력	공공연구성과 기반 사업아이디어.창업 아이템 연계성, 지식재산권 확보, 네트워크 보유, 대표자 및 팀원의 보유역량과 성장 가능성	10	10
합계		100	100

※ 평가항목 및 세부내용 등은 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5 시상규모 및 지원내용

□ 시상규모

- 과학기술창업 경진대회 평가결과에 따라 상장·상금 지급

< 과학기술 창업경진대회 시상규모(안) >

훈 격		예비창업트랙		창업트랙	
		규모 및 상금	특전	규모 및 상금	특전
대상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1점 (10백만원)	투자유치 엑셀러 레이팅 프로그램 제공 (시드투자 연계지원)	1점 (10백만원)	투자유치 실전 IR 컨설팅 프로그램 제공 (올해의 K-스타트업 본선 진출 지원)
최우수상	과학기술사업화 진흥원장상	1점 (5백만원)		1점 (5백만원)	
우수상	과학기술사업화 진흥원장상	3점 (각 3백만원)		3점 (각 3백만원)	
장려상	과학기술사업화 진흥원장상	2점 (각 1백만원)		2점 (각 1백만원)	

□ 트랙별 지원내용

- (창업트랙) 발표심사 합격 15팀 대상 사업화 역량 컨설팅을 지원, 이후 결선을 통해 선발된 우수 7팀에게 심화 컨설팅과 통합본선 진출 등 지원
 - (사업화 역량 컨설팅) IR 피칭 방법론, 투자유치 방안 등에 대한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결선 심사 대비한 역량강화 지원
 - (심화 컨설팅) 투자유치를 위한 실전 IR 역량강화, 전문가(AC, VC)를 통한 사업계획서 검토 및 IR 피칭 집중 컨설팅
 - (연계 지원) 올해의 K-스타트업 본선*(7팀) 및 K-디지털그랜드챌 피언십 본선**(1팀) 참여 지원
 - * 창업트랙에서 선발된 우수 7팀은 모두 올해의 K-스타트업 본선에 진출하며, 입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는 민관합동 ICT분야 창업경진대회로, 창업트랙에서 선발된 우수 7팀 중 아이템 분야 등을 고려하여 1팀에게 본선 진출권 부여
 - (올해의 K-스타트업 2026 입상팀) 창업사업화, 보증, 특허지원, 후속 R&D, 멘토링 등 후속 지원사업 연계 특전 제공(세부내용 통합공고문 참조)
- (예비창업트랙) 발표심사 합격 15팀 대상 실전창업 역량강화 멘토링을 지원, 이후 결선을 통해 선발된 우수 7팀에게 압축성장을 위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사업화 멘토링 플랫폼 통한 분야별 멘토링 우선 지원, TIPS 운용사 매칭을 통한 시드투자 후속지원
 - (역량강화 멘토링) 창업 생태계 이해, 고객 기반 비즈니스 모델 피보팅 등에 대한 교육 및 1:1 멘토링을 제공하여 실전창업 역량강화 지원
 - (분야별 멘토링)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시장 적합성(PMF) 검증, 자금 조달, 규제·법률·인사·노무·세무 등 분야별 전문가 멘토링 제공
 -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민간 액셀러레이터(TIPS 운용사)를 통한 기술기반 실전 창업 및 시드 투자(1개팀 이상) 지원
 - (투자유치 IR데모데이) 국내 저명한 투자사(AC/VC)가 참여하는 투자유치 IR(실험실창업페스티벌 연계) 기획 제공

- 모집공고문 미숙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과 그에 따른 책임은 본 경진대회 신청자에게 있음
 - 본 경진대회 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의 내용을 숙지한 후 참가 신청
- 본 경진대회 공고문과 관련 규정 위반사항 또는 사업계획서의 허위 기재·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상금 환수 등의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 33조, 제33조의2, 제40조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의 환수와 5배 이내의 제재 부가금 및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본 경진대회 창업트랙은 「올해의 K-스타트업 2026」 연구자리그를 겸하고 있으므로 동일 또는 유사한* 창업아이템으로 타부처 경진대회에 중복신청 금지하며, 중복신청 시 통합본선 진출이 제한될 수 있음
 - * 아이템에 적용된 핵심기술과 사업BM, 목적 및 지향점을 종합적으로 판단
- 다른 창업아이템으로 중복 참여하는 경우에는 통합본선 진출 시 1개의 창업아이템을 선택하여 진출해야 함 ※ 예선리그 중복추천 불가
 - ※ 예선리그별 참가 신청을 위한 창업아이템 수, 중복참여에 관한 세부내용 등이 상이할 수 있음
- 타 부처가 주최 또는 참여(후원 제외)하는 他 창업경진대회에 동일·유사한 아이템으로 중복수상 불가
 - * 예시 : 「올해의 K-스타트업 2026」 본선 진출과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본선 진출을 동시에 했을 경우 두 대회 중 택일하여 참여해야 함
- 기(既)창업한 팀원 또는 타인의 창업아이템으로 대회 참여 불가, 해당사항 적발 시 탈락될 수 있음
- 임금체불, 세금 체납, 산업재해, 불공정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밝혀질 경우 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타인의 아이디어, 기술 등을 모방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참가자(팀) 본인에게 있음
- (지식재산권 보호) 본 경진대회에서 공개한 아이디어를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공개 이전에 직접 지식재산권을 획득하여야 함
 - * 아이디어가 출원 전에 공개된 경우, 공개된 시점부터 12개월 이내(디자인은 6개월 이내) 공지 예외 적용 주장을 통해 출원 가능

< 아이디어 공지 예외 주장에 관한 공지 >

출원인이 행한 공지행위로 인해 특허 출원 시 거절이유에서 제외되는 제도로 아이디어 제공자는 아이디어가 공지 또는 공개된 시점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법」 제30조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또는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7조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고안으로 보는 경우)에 따라 특허 또는 실용신안으로 출원할 수 있으며, 공개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디자인보호법」 제51조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에 따라 디자인출원을 할 수 있음

- (기술자료 임치제도) 핵심 기술 및 경영정보를 신뢰성 있는 기관에 보관하고, 분쟁 발생 시 임치물을 이용하여 개발 및 보유 사실 입증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통해 관련 서비스 이용(유료)할 수 있음

< 기술자료임치제도 관련 법률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기술자료 임치제도) ①수탁·위탁기업[수탁·위탁기업 외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기술자료를 임치(任置)하고자 하는 기업을 포함한다]은 전문인력과 설비 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수치인"(受置人)이라 한다]과 서로 합의하여 기술자료를 임치하고자 하는 기업[이하 "임치기업"이라 한다]의 기술자료를 임치할 수 있다.

-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아이디어 소유권자, 원본존재 및 보유 시점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영업비밀 보호센터(한국지식재산보호원)를 통해 관련서비스 이용(유료)가능하며, 대회 참가팀 대상으로는 무료 서비스 제공
 - * 원본증명서비스 조기소진 시 지원종료 될 수 있음

<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관련 법률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영업비밀 원본증명) ①
영업비밀 보유자는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원본 여부를 증명받기 위하여
제9조의3에 따른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에 그 전자문서로부터 추출된 고유의 식
별값[이하 "전자지문"(電子指紋)이라 한다]을 등록할 수 있다.

- (비밀준수) 본 경진대회 참가팀의 아이디어는 운영기관의 보안규
정, 심사위원의 보안서약 등을 통해 비밀유지

< 비밀준수 관련 법률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1항차목 ①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만, 아이디어
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선행기술조사) 본 경진대회 및 연계대회의 수상자와 타 특허권자의
분쟁을 사전에 최소화하기 위해 트랙별 발표심사 합격팀(각 15팀)을
대상으로 선행기술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후 진행되는 심사 등에
조사결과가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8

문의처

- (경진대회 문의처)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창업탐색선도센터
○ (Tel) 02-6347-5547

참고1

올해의 K-스타트업 2026 통합본선 운영일정(안)

□ 대회 운영 일정 (창업트랙에 한함)

참가자 모집	예선	통합본선 추천	통합본선 평가	왕중왕전
부처별 예선리그 접수	부처별 예선 (서류·발표심사 등)	예선리그별 추천, 통합본선 개막식(9월초)	왕중왕전 진출팀 결정 (발표평가)	최종 20팀 순위 결정 (발표평가)
2월~6월말	~8월 말	9월 초	10~11월 중	12월 초

※ 대회 운영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예선리그별 세부 공고문 확인

□ 상금 및 상장

○ 왕중왕전 총 상금 8.9억원(최대 5억원) 및 대통령상 등 상장(20점) 수여

※ 올해의 K-스타트업의 공식적인 수상팀은 '대상' ~ 'TOP 20' 수상팀을 의미

< 올해의 K-스타트업 2026 왕중왕전 시상규모 >

창업리그		
구분	훈격	상금
TOP 1(대상)	대통령	5억원
TOP 2(최우수상)	국무총리	1억원
TOP 6(우수상)	과기정통부장관	각 5천만원
	교육부장관	
	국방부장관	
	문체부장관	
TOP 10(장려상)	기후부장관	각 1천만원
	성평등부장관	
	지재처장	
	방사청장	
TOP 20(특별상)	중기부장관	각 5백만원

* 상금 규모는 세금 포함

** 수상팀은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특별상에 해당(후속 연계 지원 '수상팀' 반영)

※ 상격, 훈격 및 상금 규모 등은 대회 운영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참고2

창업여부 기준표

신청기업 구분	상세 구분		창업여부	
개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	창업아님	
		이종	창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창업아님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업
			폐업 3년 초과	창업
동종창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업		
법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업
			폐업 3년 초과	창업
		동종창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동종전환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	창업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또는 최대주주	창업아님
		동종창업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창업
자회사 여부	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과점주주 여부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회사형태 변경	동종유지		창업아님	
	이종		창업	

-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 동종 업종,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완료, 양도기업의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
- ※ 동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 과점주주 :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 ※ 창업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창업 범위의 변경에 따른 종전 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 ①2020.10.8.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시행령 제31108호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 "개인사업자 설립일이 '20.10.8. 이전이면서, 다른 장소에서 이업종의 개인사업자를 설립"한 경우 "창업"으로 판단
- ②영 시행(2022.6.29.)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영 제2조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